

[별첨 1]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주요 내용

1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·통신 융합(국민은행)

신청기업명	기업 담당자	금융위 은행과		금감원 은행감독국	
(주)국민은행	박형주 부장 (02-2073-7230)	전요섭 과장	02-2100-2950	김병철 부국장	02-3145-8022
		서지은 사무관	02-2100-2954	김태웅 선임	02-3145-8027

- (서비스 주요내용) 은행에서 금융과 이동통신(알뜰폰)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여, 간편하고 저렴한 금융·통신 융합서비스 제공
 - *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(MVNO,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): 이동통신사업자(SKT, KT, LGU+)로부터 통신망을 임차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(통칭 '알뜰폰')
- (규제특례 신청내용) 금융과 통신업의 높은 시너지 효과를 감안, 비금융업인 가상이동통신망사업을 은행의 부수업무*로 인정
 - * 은행법령 해석상 알뜰폰 사업은 은행 고유업무와의 연관성이 없어 은행의 부수업무로 인정 곤란
- (심사결과)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 등 요건을 충족. 다만,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부가조건을 반영하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

※ 주요 부가조건 세부 내용

- ① 금융상품 판매시 스마트폰 판매, 요금제 가입 등을 유도하는 구속행위를 방지
- ② 통신사업이 은행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장치마련 등
- * 예: 통신서비스 판매 관련 영업점간 또는 은행 직원들의 과당 실적 경쟁

- (기대효과) 금융업자가 통신업을 영위하는 첫 사례로서, 국민 실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 산업간 융합으로 혁신 서비스 출현
 - 향후 금융·통신 결합 정보를 토대로 신용평가 개선 및 새로운 금융상품 출시, 통신시장 확대 등 혁신의 확장성도 기대
- (향후일정) MVNO 사업자 등록, IT인프라 구축(전용선 개통, 앱 개발 등)을 거쳐 금년 9월부터 서비스 출시 예정

※ 향후 법령, 제도개선 검토 사항

-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경과를 보아가며, 사전신고가 필요없는 부수업무 범위에 포함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(금융위 공고 개정) 검토

2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(디렉셔널)

신청기업명	기업 담당자	금융위 자본시장과		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	
디렉셔널	정지원 대표 (070-5208-8457)	안창국 과장	02-2100-2650	문상석 팀장	02-3145-7590
		허 성 사무관	02-2100-2655	민중후 선임	02-3145-7591

- (서비스 주요내용) 블록체인 기반의 주식대차 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자유로운 주식대차와 차입기회를 제공
- (규제특례 신청내용) 자본시장법(제11조, 제40조)
 - 금융투자업(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) 인가를 받지 않더라도 증권대차의 중개업*을 허용
 - * 자본시장법상 증권대차의 중개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겸영업무
- (심사결과)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 등 요건을 충족하나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부가조건을 반영하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

※ 주요 부가조건 세부 내용

- ① 단일 증권사 내의 개인투자자간 대차중개로 서비스 범위를 제한
- ② 현금배당 외에 다른 권리이벤트에도 강제리콜 없이 권리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 등

- (기대효과) 개인투자자들이 유통대주가 아닌 중개플랫폼에 참여하여 개인투자자의 주식 차입기회가 확대
 - 특히, 실시간 호가데이블을 통해 주식대차가 이루어짐으로써 합리적인 시장가격에 따른 대차수수료가 결정
- (향후일정) 신한금융투자와 전산연결 테스트 등을 거쳐 금년 6월부터 서비스 제공 예정

※ 향후 법령, 제도개선 검토 사항

-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경과를 보아가며, 겸영업무로 되어 있는 증권대차 중개를 별도의 업으로(예:증권대차중개업) 신설하는 방안 등 제도개선 방안 검토

3

On-Off 해외여행자 보험(NH농협손보)

신청기업명	기업 담당자	금융위 보험과		금감원 보험감독국	
농협손해보험	윤순철 차장 (02-3786-7785)	하주식 과장	02-2100-2960	홍영호 팀장	02-3145-7471
		현지은 사무관	02-2100-2962	변효길 선임	02-3145-7473

- (서비스 주요내용) 특정 기간 내에 해외여행자보험에 반복적으로 재가입하는 경우, 재가입시에는 보험업법에 따른 설명 및 공인인증 절차 없이 간편하게 보험 가입

* 핸드폰 위치정보 등을 활용하여, 공항진입시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Pop-Up 안내

- (규제특례 신청내용) 보험업법 제95조의2의 설명의무 및 제96조의 공인전자서명 등을 통한 확인 의무

- 최초 가입시 보험상품 설명 등 가입절차를 거치고, 재가입시에는 반복 설명 및 공인전자서명 없이 간편하게 가입토록 허용

- (심사결과) 소비자 편익 등 요건을 충족. 다만,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부가조건을 반영하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

※ 주요 부가조건 세부 내용

- ① 최초로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설명의무와 청약의사 확인의무를 모두 이행
- ② 간편 재가입시에는 직전 체결하였던 여행자보험과 조건 동일 등

- (기대효과) 해외여행자 보험에 자주 가입하여 상품에 대한 반복 설명이 불필요한 소비자의 간편·신속한 보험가입 가능

- 간편한 on/off 기능을 통해 고객이 원할 때 보장을 개시할 수 있고 등록된 카드정보로 간편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익 증대 효과

- (향후일정) 상품 및 전산개발 등을 거쳐 6개월 내 서비스 출시

※ 향후 법령, 제도개선 검토 사항

-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결과를 보아가며, 온라인 채널에서의 소액 간단보험 가입 절차 관련 규제 완화여부 검토

4

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(레이니스트)

신청기업명	기업 담당자	금융위 보험과		금감원 보험감독국	
레이니스트	최재웅 이사 (010-8725-9241)	하주식 과장	02-2100-2960	홍영호 팀장	02-3145-7471
		현지은 사무관	02-2100-2962	변효길 선임	02-3145-7473

- (서비스 주요내용) 특정 기간 내에 해외여행자보험에 반복적으로 재가입하는 경우, 재가입시에는 보험업법에 따른 설명 및 공인인증 절차 없이 간편하게 보험 가입

- (규제특례 신청내용) 보험업법 제95조의2의 설명의무 및 제96조의 공인전자서명 등을 통한 확인 의무

- 최초 가입시 보험상품 설명 등 가입절차를 거치고, 재가입시에는 반복 설명 및 공인전자서명 없이 간편하게 가입토록 허용

- (심사결과) 소비자 편익 등 요건을 충족. 다만,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부가조건을 반영하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

※ 주요 부가조건 세부 내용

- ① 최초로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설명의무와 청약의사 확인의무를 모두 이행
- ② 간편 재가입시에는 직전 체결하였던 여행자보험과 조건 동일 등
- ③ 보험대리점 등록 및 서비스 개시 전 금융위 협의

- (기대효과) 해외여행자 보험에 자주 가입하여 상품에 대한 반복 설명이 불필요한 소비자의 간편·신속한 보험가입 가능

- 간편한 on/off 기능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시간, 장소, 상황에 맞추어 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 위험에 유연하게 대비할 수 있으며 소비자 편익 증대 효과

- (향후일정) 보험대리점 등록 등을 거쳐 상반기 내 서비스 출시

※ 향후 법령, 제도개선 검토 사항

-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결과를 보아가며, 온라인 채널에서의 소액 간단보험 가입 절차 관련 규제 완화여부 검토

5

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(신한카드)

신청기업명	기업 담당자	금융위 중소기업과		금감원 카드결제감독팀	
신한카드 주식회사	고영민 차장 (02-6950-7389)	홍성기 과장	02-2100-2990	이창규 팀장	02-3145-7440
		성미라 사무관	02-2100-2992	김지선 선임	02-3145-7564
		이지호 사무관	02-2100-2983		

- (서비스 주요내용) 신한카드 회원 및 비회원을 대상으로 신한페이판(PayFAN) 앱을 이용한 신용카드 기반의 송금 서비스 제공
- (규제특례 신청내용) 여신전문금융업법(제2조, 제19조)
 - 가맹점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신청(법§2제5호, 법§19⑤제1호)
 - 일반적인 송금거래관행에 맞게 송금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송금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가맹점의 신용카드사용자에 대한 수수료 전가 금지 규정에 대한 특례 신청(법§19④)

- (심사결과)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 등 요건을 충족, 다만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부가조건을 반영하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

※ 주요 부가조건 세부 내용

- ① 거래내역정보 등을 별도 관리하고, 불법현금유통 적발시 당국에 보고
- ② 거래정보가 확인 가능한 플랫폼 구축, 결제취소 정보 안내 등

- (기대효과) 신용카드를 이용해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송금할 수 있어 이용자의 결제편의성 증대
 -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결제서비스 출시로 소비자가 상황에 맞게 다양한 결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의성 제고

* (예시) 경조사 등 개인 간 송금, 중고거래 등 개인간 일회성 직거래 등

- (향후일정)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및 시범서비스 등을 거쳐 '20년 1월부터 서비스 출시 예정

※ 향후 법령, 제도개선 검토 사항

-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결과 부작용이 크지 않고 결제편의성 제공 등 효과가 입증될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내용을 반영해 법령 개정을 검토

6

개인 가맹점을 통한 QR 간편결제 서비스(BC카드)

신청기업명	기업 담당자	금융위 중소기업과		금감원 카드결제감독팀	
비씨카드 주식회사	문승만 팀장 (02-3496-1467)	홍성기 과장	02-2100-2990	이창규 팀장	02-3145-7440
		성미라 사무관	02-2100-2992	김지선 선임	02-3145-7564
		이지호 사무관	02-2100-2983		

- (서비스 주요내용)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노점상 등 영세상인에게 QR을 활용한 신용카드 수납 서비스 제공
- (규제특례 신청내용) 여신전문금융업법(제2조)
 -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판매자도 물품판매·용역제공자에 포함되어 가맹점 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(법§2제5호제거목)
- (심사결과) 혁신성과 소비자편익 등 요건을 충족, 다만 소비자 보호, 탈세방지 등을 위해 부가조건을 반영하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

※ 주요 부가조건 세부 내용

- ① 카드매출정보를 과세당국에 제공하고 불법현금유통 적발시 당국에 보고
- ②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부가조건* 마련 필요 등

* 소비자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, 카드사 책임강화, OR거래추이 모니터링, QR위변조사고 시 소비자보호체계 마련 등

- (기대효과) 동 서비스를 통해 현금외에 QR을 활용한 카드수납이 가능해서 미등록사업자인 소상공인의 결제환경이 개선되고 소비자 편익도 증대
 - 별도 단말기 없이 모바일 결제가 가능하고, 외국인도 별도의 환전 절차 없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QR 간편결제가 가능해지는 등 판매자-소비자 양측의 편의증진에 기여

- (향후일정) 앱 등 전산개발, 가맹점 모집 방안 수립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 후 시범사업('19.10월) 및 본 서비스 실시('20.1월) 계획

※ 향후 법령, 제도개선 검토 사항

-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결과 부작용이 크지 않고 이용자의 편의 제공, 영세상인 매출증가 등 효과가 입증될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내용을 반영해 법령 개정을 검토

7

카드정보 활용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(신한카드)

신청기업명	기업 담당자	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		금감원 신용정보평가실	
신한카드	조부연 부부장 (02-6950-7062)	이한진 과장	02-2100-2620	권민수 실장	02-3145-7850
		송현지 사무관	02-2100-2621	윤동진 수석	02-3145-7831

- (서비스 주요내용) 신한카드가 보유한 카드가맹점 정보를 이용하여 영세·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평가하여 금융기관 등에 제공
 - 개인사업자 신용정보 분석, 거래진단을 통한 신용관리 컨설팅 제공
- (규제특례 신청내용) 「신용정보법」상 신용조회사(CB:Credit Bureau)가 아닌 카드사에 개인사업자에 관한 신용조회업무 수행을 허용
 - * 「신용정보법」 제4조, 제50조제2항제1호 및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4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
- (심사결과)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 등 요건을 충족하여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하되, 신용정보산업의 책임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부가조건을 부여

※ 주요 부가조건 세부 내용

- ① 「신용정보법」상 신용조회회사가 준수해야할 「신용정보법」상 의무 준수
- ②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행위규칙* 준수 등
 - * 예 : (1)가맹점 등 상거래관계가 있는 자와 그 외의 자에 대한 차별 금지, (2)자사 또는 계열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지 않을 것 등

- (기대효과) 업종·상권 등을 반영한 사업체 경쟁력, 재방문율·타겟 고객 선호도 등 매출의 질적측면을 반영한 새로운 신용평가 가능
 - 정확한 신용평가로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해소하고 금융회사도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가능
- (향후일정) 금년 10월 중 신한금융지주 그룹사 내 Pilot 서비스를 실시하고 연내 정식 서비스 출시 예정

※ 향후 법령, 제도개선 검토 사항

- 현재 카드사에 개인사업자CB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「신용정보법」 개정 추진 중

8

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(페이플)

신청기업명	기업 담당자	금융위 전자금융과		금감원 IT총괄국	
페이플	김현철 대표 (010-7301-3236)	주홍민 과장	02-2100-2970	장기영 부국장	02-3145-7415
		유원규 사무관	02-2100-2974	김종은 선임	02-3145-7418

- (서비스 주요내용) 온라인 쇼핑물 등에서 SMS 인증방식의 출금동의를 거쳐 계좌를 등록하고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
- (규제특례 신청내용) 출금동의 및 진입요건 특례 요청
 - ① (출금동의) 현재 추심이체 출금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서면, 전자서명, 전화 녹취, ARS(Audio Response System) 방식으로 한정
 - ⇒ SMS 인증 방식으로 출금동의를 위한 특례 인정 요청
 - ② (진입요건) 현재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을 위해서는 3억원의 자본금과 부채/자기자본이 200% 이내, 전산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임직원을 5명 이상 확보하고, 전산 인력의 직무 분리를 요구
 - ⇒ 자본금, 재무건전성, 전문인력, 직무분리 요건 예외 특례 요청
- (심사결과)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 등 요건을 충족. 다만,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부가조건을 반영하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

※ 주요 부가조건 세부 내용

- ① (진입요건) '19.7월부터 6개월간 우선 혁신금융서비스 후, 진입요건(자본금, 인력, 직무분리, 재무건전성)을 보완시 서비스 6개월 연장
- ② (이용한도) 매월 이용자('19.7월 200명 → '20.5월 2,000명 제한), 거래 현황 점검 등
- ③ (소비자 보호) 제휴 사업자, 소비자에게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 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통지, 약관 등에 반영

- (기대효과) 다른 방식에 비해 SMS 인증을 통해 결제가 간편해지고, 새로운 방식의 안전성을 테스트 하는 계기
 - 진입요건 완화로 소규모 혁신적 스타트업의 전자금융업 진입 활성화
- (향후일정) 전산설비 마련, 책임보험 가입, 전자금융업 등록 등을 거쳐 '19.7월부터 서비스 개시, 6개월 내 진입요건 완비

※ 향후 법령, 제도개선 검토 사항

-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결과를 보아가며, 보안성·소비자 보호·금융시장 안정 등에 문제 없을 시 규제개선을 검토

신청기업명	기업 담당자	금융위 금융혁신과		금감원 핀테크혁신실	
(주)루트에너지	윤태환 대표 (02-792-8934)	송현도 과장	02-2100-2530	심은섭 팀장	02-3145-7135
		양병권 사무관	02-2100-2535	김갑제 선임	02-3145-7137

- (서비스 주요내용) 태양광,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지역주민과 국민들이 투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P2P금융 서비스
 - 특히, 지역주민은 우대금리를 제공하여 지역개발 사업의 이익 공유
- (규제특례 신청내용) 신재생에너지(태양광, 풍력 발전 등) 사업의 규모, 주민참여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인투자자의 P2P투자한도* 완화
 - * 과도한 P2P투자로 인한 손실방지 등을 위해 P2P대출 가이드라인으로 규율
 - (일반 개인) 차입자당 5백만원, P2P업체당 1천만원
 - (소득적격 개인) 차입자당 2천만원, P2P업체당 4천만원
- (심사결과) 혁신성과 소비자 편의 등 요건을 충족. 다만,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부가조건을 반영하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

※ 주요 부가조건 세부 내용

- ① (P2P대출 조건) 신·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사업 중 지역주민 참여 사업
- ② (투자 한도) 지역주민의 투자한도는 동일 차입자당 4,000만원, P2P업체당 1억원 등
 - 이외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는 동일 차입자당 2,000만원, P2P업체당 5,000만원

- (기대효과)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, 지역주민 협조가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들이 참여(투자)하는 새로운 금융모델 창출
 - 지역주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로 장기 투자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적 가치 창출 기대
- (향후일정) P2P금융 온라인 플랫폼 개선과 입찰, 계약 등 사업 참여를 병행 추진하여 금년 11월부터 서비스 출시 예정

※ 향후 법령, 제도개선 검토 사항

- 현재 P2P대출 법제화 추진중으로 금번 혁신금융서비스 내용을 반영할 계획
 - 법제정 이후 다른 P2P업체도 동일 서비스에 대해서는 완화된 투자한도 적용 가능